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박기열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2447호
- 다. 발의일자: 2021. 5. 27
- 라. 회부일자: 2021.

### 2. 제 안 사 유

-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별지 제1호 서식 ‘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’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권고용어에 해당되는 “자인”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권고용어인 “스스로 인정”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별지 제1호서식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중 “자인합니다.”를 “스스로 인정합니다.”로 변경 함. (별지 제1호 서식)

## 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알기쉬운법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권고사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중 “자인합니다.”를 “스스로 인정합니다.”로 변경하는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(자인; 自認)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쉬운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